

의안번호	제95호
의결연월일	2017. 12. 20.

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17일 논산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12월 20일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친절 행정국 100세 행복과가 신설됨에 따라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에 관한 조항에 이를 반영하고

○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2017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복지위원 규정 삭제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100세 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
(안 제5조제3항)

- 2)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100세행복과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위촉 (안 제7조제3항)
- 3)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(안 제2조,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